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
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을 이용하여 항공촬영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촬영 대상 지역이 군사기지 등 항공촬영 사전 신청 필요 지역인지 여부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관한 정보 수집·제공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「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9976호, 2024. 1. 9. 공포, 2024. 7. 10. 시행)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한편, 드론 활용이 산업분야를 넘어 취미·레저 분야까지 확산하고 있으나, 도심 내 상당수 지역이 보안 등 이유로 비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등 드론을 활용한 취미·레저비행 공간이 부족하여 승인받지 않은 도심 내 불법 비행 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임, 이에 국민들이 드론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취미·레저를 즐길 수 있는 드론공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(법률 제20295호, 2024. 2. 13. 공포, 2024. 8. 14. 시행)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된 드론공원의 지정·운영 등에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보의 범위와 제공방식 규정(안 제8조의2)

나. 드론공원의 지정 신청 등에 관한 절차 규정(안 제12조의2)

시·도지사등은 드론공원을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 및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규정,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

다. 드론공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규정(안 제12조의3)

드론공원 지정 요건 및 해제 사유와 지정 신청서 검토 기간 및 결과 고시 등 제반 절차 규정

라. 드론공원의 지정·변경 등에 대한 신청의 접수·확인·관리를 위한 업무 위탁 근거 마련(안 제20조제1항제4호의2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 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9조의2제1항제6호”를 “법 제9조의2제1항제7호”로 한다.

- ① 법 제9조의2제1항제6호 단서에 따른 정보는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」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시되는 사항을 말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는 「국가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」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.

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드론공원의 지정신청 등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이하 “시·도지사등”이라 한다)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드론공원의 지정(변경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드론공원 운영계획(이하 “공원운영계획”이라 한다)을

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드론공원의 명칭 · 위치 · 면적 · 고도
 2. 드론공원을 포함한 주변지역의 공역(「항공안전법」 제78조에 따른 공역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현황
 3. 드론공원을 포함한 주변지역의 군사시설 등 국가중요시설 현황
 4. 드론공원의 운영 · 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
 5. 드론공원 활용 및 운영 방안(시 · 도지사등이 지원할 수 있는 인력 및 예산 등을 포함한다)
 6. 법 제11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 중 면제 또는 간소화가 필요한 사항 및 범위
 7. 드론공원 안전관리 조치계획
 8. 제4항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
- ② 법 제11조의2제2항 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1. 드론공원의 위치 · 면적 · 고도
 2. 드론공원을 포함한 주변지역의 공역 현황
 3. 드론공원을 포함한 주변지역의 군사시설 등 국가중요시설의 현황
 4. 법 제11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 중 면제 또는 간소화에 관한 사항
 5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공원의 변경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시 · 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드론공원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다음

각 호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.

1.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의 의견수렴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)

2. 주민의 의견수렴

3. 공역 관할기관의 의견수렴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·도지사등에게 공원운영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완을 요청 받은 시·도지사등은 요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완된 공원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한다.

제12조의3(드론공원의 지정·운영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드론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드론공원의 지정 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

2. 드론 비행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것

3. 드론공원 인근 주민과 이용자들의 안전 및 주변 환경에 위해를 가하지 않을 것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(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)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드론공원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여부를 결정하고, 그 결과를 해당 시·도지사등 및 지방항공청에 통보해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

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.

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 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.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드론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요건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⑤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드론공원의 지정을 받은 경우
2.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정비·보수 등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
3.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드론공원 지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운영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
4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공원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공원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,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·도지사등 및 지방항공청에 통보하여야 한다.

1. 드론공원의 명칭·위치·면적·고도
2. 드론공원이 표시된 지형도면(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제2항

에 따른 지형도면을 말한다) 또는 지적도

3. 드론공원의 특례내용(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면제 또는 간소화 내용을 말한다)

4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공원의 지정·변경 또는 해제에 관련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20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2. 법 제11조의2에 따른 드론공원 지정 신청의 접수·확인 및 관리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2조의2, 제12조의3 및 제20조제1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의2(드론 정보체계의 구축·운영 등) <신 설>	제8조의2(드론 정보체계의 구축·운영 등) ① 법 제9조의2제1항제6호 단서에 따른 정보는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」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시되는 사항을 말한다.
<신 설>	② 제1항에 따른 정보는 「국가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」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.
법 제9조의2제1항제6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”란 다음 각 호의 정보(「항공안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)를 말한다.	③ 법 제9조의2제1항제7호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제12조의2(드론공원의 지정신청 등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이하 “시·도지사등”이라 한다)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드론공원의 지정(변경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신청하려

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
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
사항을 포함한 드론공원 운영계
획(이하 “공원운영계획”이라 한
다)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
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드론공원의 명칭·위치·면
적·고도

2. 드론공원을 포함한 주변지역
의 공역(「항공안전법」 제78
조에 따른 공역을 말한다. 이
하 이 조에서 같다) 현황

3. 드론공원을 포함한 주변지역
의 군사시설 등 국가중요시설
현황

4. 드론공원의 운영·관리에 필
요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

5. 드론공원 활용 및 운영 방안
(시·도지사등이 지원할 수
있는 인력 및 예산 등을 포함
한다)

6. 법 제11조의2제3항 각 호의
사항 중 면제 또는 간소화가
필요한 사항 및 범위

7. 드론공원 안전관리 조치계획

8. 제4항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

② 법 제11조의2제2항 후단에서
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
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
말한다.

1. 드론공원의 위치·면적·고
도
2. 드론공원을 포함한 주변지역
의 공역 현황
3. 드론공원을 포함한 주변지역
의 군사시설 등 국가중요시설
의 현황
4. 법 제11조의2제3항 각 호의
사항 중 면제 또는 간소화에
관한 사항
5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
드론공원의 변경 지정이 필요
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·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
라 드론공원의 지정을 신청하려
면 다음 각 호의 의견수렴을 거
쳐야 한다.

1.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
의 의견수렴(특별자치시장 및
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 시
장·군수·구청장이 신청하는
경우에만 해당한다)

<신 설>

2. 주민의 의견수렴

3. 공역 관할기관의 의견수렴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·도지사등에게 공원운영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완을 요청 받은 시·도지사등은 요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완된 공원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한다.

제12조의3(드론공원의 지정·운영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드론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드론공원의 지정 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

2. 드론 비행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것

3. 드론공원 인근 주민과 이용자들의 안전 및 주변 환경에 위해를 가하지 않을 것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의 2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

내(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보완
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)에 관
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
를 거쳐 드론공원의 지정 또는
변경지정 여부를 결정하고, 그
결과를 해당 시·도지사등 및
지방항공청에 통보해야 한다.
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
우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
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.

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
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협의
를 요청 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
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
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
사유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
관과 협의하여 10일 이내의 범
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
할 수 있다.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
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드론공원
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요건을
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⑤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
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
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드론공원의 지정을 받은 경우

2.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정비·보수 등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

3.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드론공원 지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운영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

4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공원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공원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,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·도지사등 및 지방항공청에 통보하여야 한다.

1. 드론공원의 명칭·위치·면적·고도

2. 드론공원이 표시된 지형도면(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을

제20조(업무의 위탁) ① 국토교통 부 장관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 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4. (생 략) <u><신 설></u> 5. ~ 9. (생 략) ② ~ ④ (생 략)	<u>말한다) 또는 지적도</u> 3. <u>드론공원의 특례내용(법 제1</u> <u>1조의2제3항에 따른 면제 또</u> <u>는 간소화 내용을 말한다)</u> 4. 그 밖에 <u>국토교통부장관이</u> <u>드론공원의 지정·변경 또는</u> <u>해제에 관련하여 고시할 필요</u> <u>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 제20조(업무의 위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4의2. <u>법 제11조의2에 따른 드</u> <u>론공원 지정 신청의 접수·확</u> <u>인 및 관리</u> 5. ~ 9. (현행과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	
연 락 처	(044) 201 - 4315